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36

발의연월일: 2022. 11. 23.

발 의 자: 박성중・김영식・하영제

윤두현 • 홍석준 • 권성동

서일준 · 최춘식 · 정희용

유경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인력 등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기업이 공시한 정보보호 현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공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및 정정 요청에 대한 근거를 명시 하고 기업이 공시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검증이나 공 시내용 정정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정보보호 공시 제 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조, 제41조).

법률 제 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 내용을 검증하 고, 검증을 통하여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공시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 내용의 검증이나 수정 요청을 거부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 ③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
	보호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
	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 내
	용을 검증하고, 검증을 통하여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공시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u><신 설></u>	⑤ 제4항에 따른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세
	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u>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41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
	시 내용의 검증이나 수정 요
	<u>청을 거부한 자</u>